

보증보험등 가입금액(영업보증금 예치금액) 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(단위: 천 원)

| 여행업의 종류<br>(기획여행 포함)<br>직전 사업연도<br>매출액 | 국내여행<br>업 | 국외여행<br>업 | 일반여행<br>업 | 국외여<br>행업의<br>기획여<br>행 | 일반여행업의<br>기획여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,000    | 30,000    | 50,000    | 200,000                | 200,000        |
|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,000    | 40,000    | 65,00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| 45,000    | 55,000    | 85,000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| 85,000    | 100,000   | 150,000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<br>만                   | 140,000   | 180,000   | 250,000   | 300,000                | 300,000        |
| 1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<br>만                | 450,000   | 750,000   | 1,000,000 | 500,000                | 500,000        |
| 1000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50,000   | 1,250,000 | 1,510,000 | 700,000                | 700,000        |

- (비고) 1.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  
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  
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 
고 유지하여야 한다.
2.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 
(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)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 
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  
로 한다.
3.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 
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  
로 한다.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  
다.
4.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  
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
5.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,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  
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 
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.